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1004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B

변론 종결2024. 9. 10.

판결 선고2024. 10. 29.

주 문

- 별지 목록 제6 내지 11, 14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8. 2. 2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2. 2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685,0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3,685,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C가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12,799,117원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하는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주문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및 C의 사해의사 존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방헤미

별지

1)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대전지방법원 2023개회2994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6. C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 C는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6. 21. C의 항고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4라10086), 위 결정은 2024. 7.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C가 대전지방법원 2024개회1537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